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1. ~ 2026.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제1항제1호·제6호·제6호의2·제8호”를 “제1항제1호·제6호·제6호의2·제8호·제10호”로 한다.

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고 존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3부터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토지소유자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우 (전화번호:)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현황				
	확인내용(※)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⑪종류(용도)	⑫구조	⑬연면적(㎡)	⑭층수	⑮사용연수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⑯권리종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⑰설정기간	⑱잔존기간	⑲담보(한도)	⑳지대(연액:원)	㉑특기사항
비고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垔)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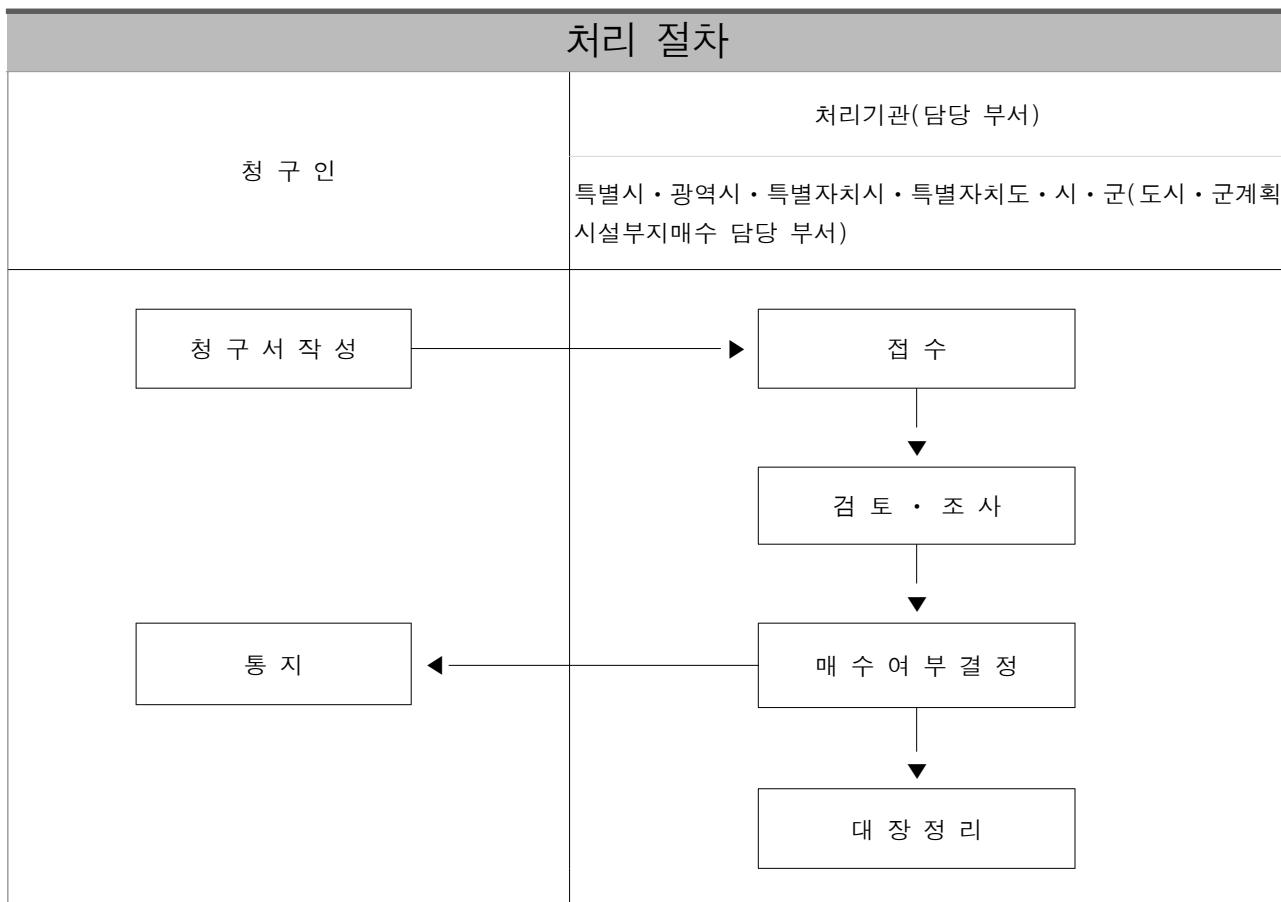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작성 방법>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3. ⑧·⑨·⑩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4. ⑪~⑮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5. ⑯~㉑란에는 「민법」에 따른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별지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기간	착수에정일 ~ 준공예정일	

사업의 대상인 토지 또는 건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세
자금조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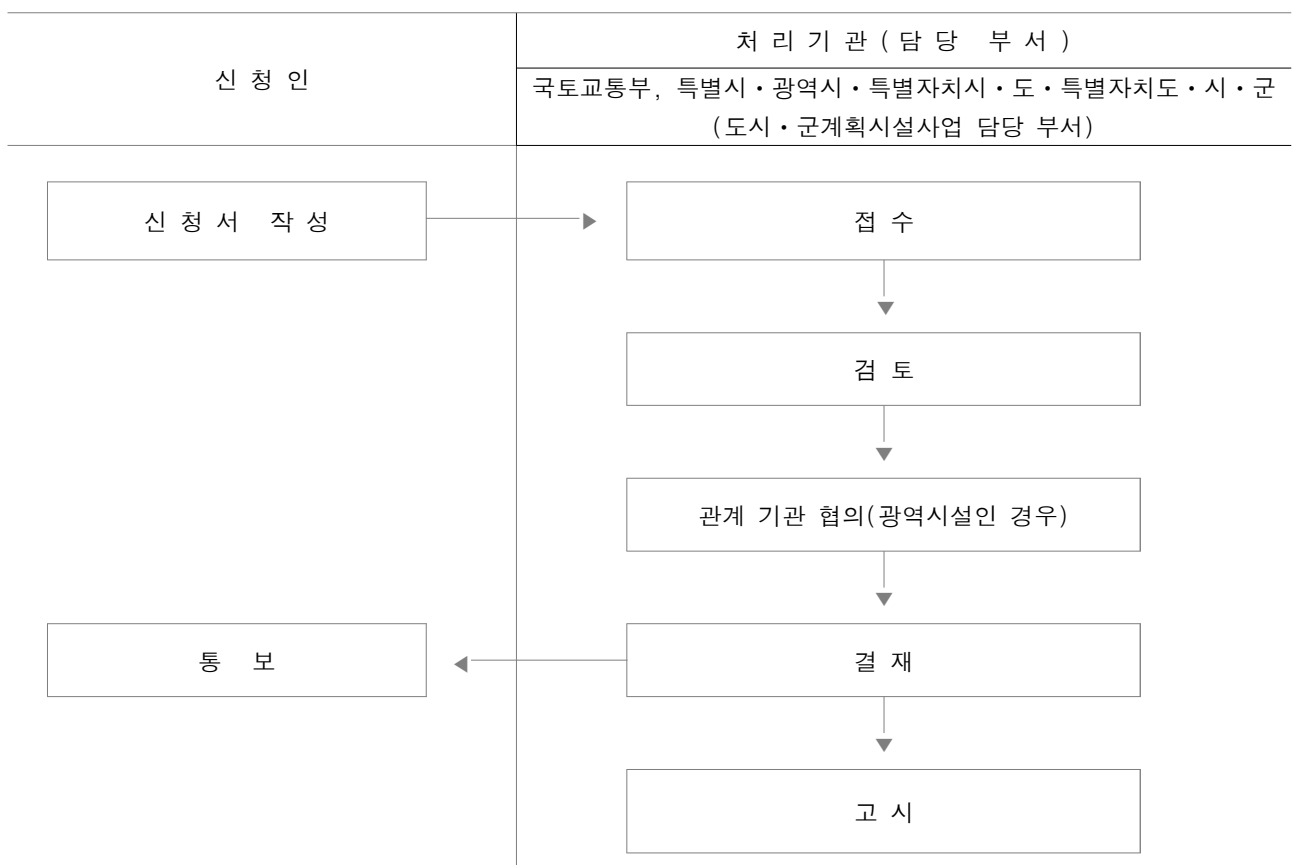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다른 법령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의 대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m ²)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m ²)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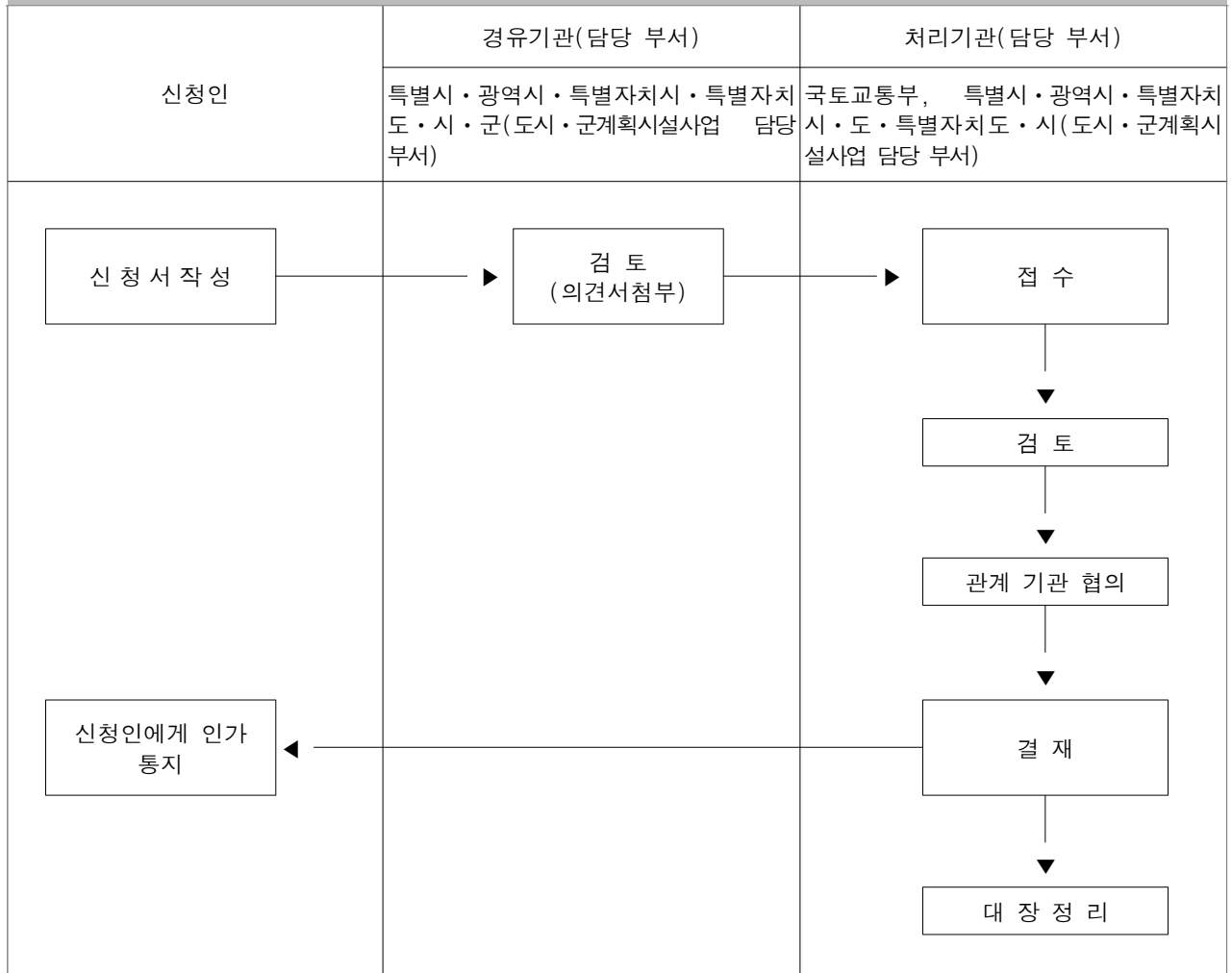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 (재활용품)]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별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완료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소요사업비					공 사 완 료 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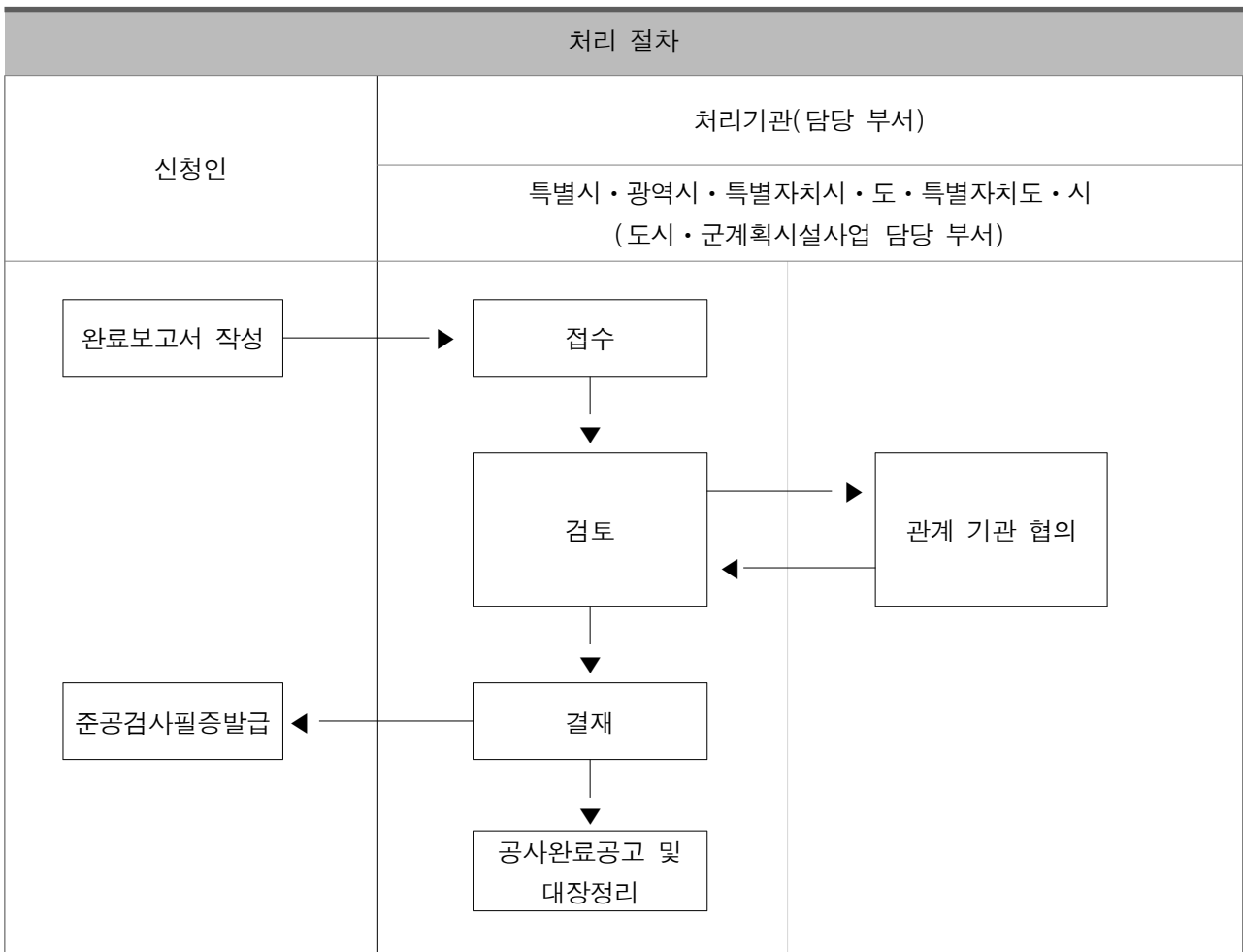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사항) ①	-----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학교		8. -----		
가.~ 나.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의3에 따른 대안학교 9. ~ 12. (생략)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 ~ 4. (생략) 5. <u>제1항제1호·제6호·제6호의2·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u> <신설>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9. ~ 12. (현행과 같음) ②----- ----- ----- -----. 2. ~ 4. (현행과 같음) 5. <u>제1항제1호·제6호·제6호의2·제8호·제10호</u>----- -- <u>제13조의3(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u>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 ----- ----- ----- ----- ----- ----- -----
--	---

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u>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고 존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